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카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21세기 생협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전의약분업을 위한 시민모임/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2000.6.26. 긴급기자회견)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지도부를 신속히 구속한 것과 달리 실제 환자가 생명을 잃고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권의 침해를 당한, 의료재앙이라 불리우는 이번 의료계의 파업에는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힘있는 계층의 집단적 행동이 용인됨으로서 사회적 위화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무고한 환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하여 정부가 법적용의 형평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을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물고 간 당사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또 이를 방지 혹은 묵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히 있어야 하며 이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전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영수회담의 결과로 의약분업의 원칙과 시행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그 동안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약사회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약분업시행에 동참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의사회와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약사법 개정 문제 역시 작년 3자 합의정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약분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 약, 소비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에 의해서 약사법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협회는 7월 1일 의약분업시행 동참을 결의한 만큼 이를 준수하고 변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처방 리스트 공개 등 의약분업 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약사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바란다. 아울러 약사회 또한 지금과 같이 분업준비에 최선을 다해 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후유증과 약국의 처방약품 준비상황, 7월 약사법개정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약분업은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계도기간(경과기간)을 2주정도로 설정할 것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의료계 집단폐업에서 나타났듯이 취약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확대되어 있는 농어촌의 경우 민간 병의원이 폐업을 강행함에도 보건소가 정상업무를 함으로써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비해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그 피해와 환란이 농어촌지역보다 극심하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경우 폐업조치가 없었으나 민간에 위탁경영했던 보라매병원과 일산병원이 폐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위탁병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지역에도 보건소를 확대 설치하여 1차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을 보건소가 충당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물리적 힘이 아닌 합의 절차를 통해 약사법개정과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부당한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시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 약사법개정은 의약사 시민 3자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물리적 힘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 의약분업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을 제안한다.
- 의약사는 분업준비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특히 의료계는 즉시 ‘지역의약분업협력위’에 참여하여 처방전 리스트 제공 등 적극적인 분업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하고, 민간 위탁 병원에 회수조치를 촉구한다.